



# 환경부령 제4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명훈 /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소장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령 개정안은, 1992년도에 자원재생공사가 디자인포장센터(KIDP : 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하여 성안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KIDP에서 마련한 초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상당히 변경된 내용으로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몇 년간의 시행을 거쳐 오늘날 다시 일부 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최초의 안을 작성하는데 관여하였던 입장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제4조 제3항(신설)**  
제조사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제6조 제3호 각목의 10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아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포장횟수를 포장의 겉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체(포장재 사용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재원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긴 하나 포장재 사용의 감소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 겉면의 표시사항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하는 인쇄동판의 제작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Sticker 등을 이용한 표시방법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 공포 후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현재는 3개월로 하고 있으나,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강제성 약화로 효과는 저하될 수 있으나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기관을 통한 사전검사가 아니라 자체에서 검사하여 표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과 실제내용이 틀린 경우 처벌을 강화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5조 제2항(개정)**  
제조사 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도포(코팅)한 포장재 또는 기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복합재질을 사용하여 재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항은 PVC를 첩합, 수축, 도포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PVC를 사용하는 복합재질을 규제하자는 것인지 내용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우선 문맥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미 여러 단체 및 업체에서 실행 불가능한 조항으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피포장제품에 따라서는 종이보다 우수한 포장



제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 재료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재활용 방안 개발이나, 소각 등 처리 방안개선 등을 통해 종이류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7조 제1항(개정)**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 용기를 재사용 할 수 있는 제품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중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20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2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1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이 조항 역시 개정전 보다 그 기준을 매우 강화하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가 “하여야 한다”로 강화된 것은 차치하고도 항목별로 기본 2배 심지어는 10배까지 기준이 강화되었다.

항목별로 세분하여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환경부의 의지가 보



이긴 하나 실제 재활용률이 조사·고려되었어야 할 것이다.

제2호의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 세제류의 경우 다른 제품들에 비해 매우 높은 재활용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인지, 만약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리필제품들 때문이라면 그에 못지 않은 리필 제품들이 있는 제3호의 두발용 제품들은 왜 기준이 낮은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리필에 관한 규제는 다른 조항보다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소비자들의 환경보호의식과 재사용 용기 구매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만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시행추이를 봐서 향후 개정기준보다도 더 높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별표) 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청과물, 문방구류, 신변잡화류, 의약품류, 의류가 추가로 포함되었으나 각각 제품의 특성상 기준 공간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류의 경우 회충약과 같이 1정단위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장을 위해서 공간비율 20%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건강·기호식품의 경우도 분말상품으로 1회 복용단위로 소포장한 상품은 두께가 매우 얇아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몇포단위로 상품을 재구성하여 측정해야 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품 각각의 특성에 따른 공간비율 측정방법에 대한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

KS A1005는 일반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령이하의 세부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여 측정에 따른 시비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현재 세제류에 대해 공간비율이 10%로 정해져 있는데 이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삼푸류나 일부 화장품류는 같은 제품이 여러 가지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용량차이가 적으므로(50ml~100ml) 각각의 용량에 대해 용기를 달리할 경우 용기제작 비용과 함께 별도 생산라인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세제류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간비율 허용치는 상향조정 해주고 재활용률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업체와 환경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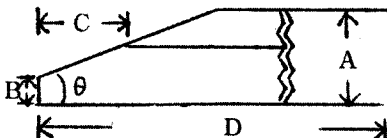
**별표 비고 4(신설)**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각각의 포장공간 비율에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LCA(Life Cycle Assessment : 전과정평가) 측면에서 볼 때, 종이류 포장재가 환경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따라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간비율을 늘려주기 보다는 KS A1005의 공간비율 측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독타 브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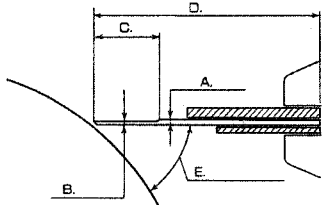


◆규격 및 종류  
 두께(A): 0.39mm, 0.55mm(표준), 1.00mm  
 폭(D): 30-70mm (50mm가 표준)  
 날의 두께(B): 0.05mm  
 날의 폭(C): 0.6mm  
 각도: 13도 재질: 폴리에스터  
 길이: 75m/reel(표준의 경우)

**플라스틱 독타 브레이드(영국 ESTERLAM사 제품)**  
 플렉소 인쇄, 그라비아 인쇄, 코팅, 라미네이션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단보루 인쇄용 플렉소 인쇄, 산화철 코팅, 접착제 코팅등에 매우 좋다

**주요한 특징**

1. 마모가 적어 동판이나 아니록스롤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재가공(부식,도금)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2. 안전하여 손을 베는 일이 없다.
3. 재질이 유연하고 취급이 간단하여 폭이 넓은 기계에 적합하다.
4. 내용제성이 뛰어나다.
5. 물에의 적용이 뛰어나다.



◆규격 및 종류  
 두께(A): 0.15mm(표준), 0.20mm, 0.25mm  
 폭(D): 30-70mm (50mm가 표준)  
 날의 두께(B): 0.07mm(표준)  
 날의 폭(C): 1.20mm(표준)  
 길이: 100m/reel

**스틸 독타 브레이드 (스웨덴 MGSA사 제품)**

**주요한 특징**

1. 정선된 스웨덴강 사용
2. 고정도의 날연마
3. 물 적용성이 좋은 특수날 형상
4. 긴 수명

수입판매원: 에림상사 TEL:0343-24-4505 FAX:0343-23-8169